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□ 펀드명 : 트러스트장기성장4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변경 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모투자신탁 추가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4.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모투자신탁 추가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6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5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라. 트러스트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	<p>제46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</p>	<p>제46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</p>

	<p>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 ~ 10. (생략)</p> <p>② ~ ⑩ (생략)</p>	<p>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3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⑩ (현행과 같음)</p>
	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